

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2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9. 6. 29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폐지이유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통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, 과태료의 부과 절차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군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구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면서 과태료의 부과권과 부과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었음.
- 따라서, 군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금액을 정하고,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,
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개정(2008.12.31 대통령령 제21228호, 2009.4.1 시행)으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통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(시행령 제33조, 별표 5)되었고,
-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(2007.12.21 법률 제8725호, 2008.6.22시행)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집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,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
폐지조례안

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